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64회 임시회

검 토 보 고 서

2023. 10. 17.(화)

순서	검 토 안 건	제 안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병준 의원 외 6명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유준상)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보고자 : 전문위원 유준상)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제출자 : 고병준의원 외 6명
- 제안일 : 2023. 10. 6.
- 회부일 : 2023. 10. 10. (의안번호 : 23-138)

2. 제안이유

- 마포구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 및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명시하여 직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특히, 국민의 다양한 서비스 수요에 따른 업무 증가 등을 고려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공무에 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소속 공무원에게 꼭 필요한 후생복지를 제공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선택적 복지제도”에서 “맞춤형 복지제도”로의 용어 변경
(안 제2조~제8조)
 -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

고, 마포구 예·결산서 상 명시되어 있는 “맞춤형 복지제도”로 조례에 명시

○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안 제7조)

- 소속공무원에게 제공하고 있는 후생복지사업을 명확하게 기재함.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 제68조(사회보장),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 입법예고: 2023. 10. 6. ~ 10. 11. 결과: 의견 없음

○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5. 검토보고

○ 본 조례안은 고병준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행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으로 마포구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 및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명시하여 국민의 다양한 서비스 수요에 따른 업무 증가 등을 고려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공무에 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소속공무원에게 꼭 필요한 후생복지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임.

○ 조항별 검토

가. 안 제2조~제8조에는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마포구 예·결산서 상 명시되어 있는 “맞춤형 복지제도”로 조례에 변경하는 내용임.

나. 안 제7조에는 소속공무원에게 제공하고 있는 후생복지사업을 명확하게 기재하는 내용임.

다. 안 제7조에서는 맞춤형 복지제도·단체보장보험·건강검진 비용 등을 구분하였는 바, 이는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은 자치법규가 제정되어 있는 경우 별도 예산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지침이 변경(2019년 지방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침, 2018. 10. 시행)됨에 따라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라. 서울특별시 타 자치구 현황

“맞춤형 복지제도”, “단체보험료” 및 “건강검진 비용” 등을 구분하고 구체적으로 후생복지사업의 종류를 명시한 자치구는 12개 자치구가 해당됨(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서대문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중구, 중랑구).

6. 종합 검토의견

- 「지방공무원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의 복지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휴양·안전·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는 국가공무원과의 형평성, 재정자립도 등 해당 자치단체의 여건을 적극 고려하여 기준액 이내로

결정하도록 하고, 후생복지에 관한 자치법규가 제정되어 있는 경우 자치법규에 의하여 집행하도록 하고 있음.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별표 5(p68)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 ① 경비성격 :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방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경비(시·도 관련 조례에 따라 자치경찰사무 담당 또는 수행 공무원 지원 목적 예산편성 가능)
- ② 기 준 액 : 2024년 맞춤형 복지비 기준액은 아래 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 이내(1인당 평균)로 설정
- 2023년 기준액(140만원) × (1 + 2024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
- ③ 편성방법
 - 해당 자치단체 ' 23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가 기준액 이상인 자치단체는 ' 23년과 동일하게 편성(인상불가) 또는 기준액 이내로 편성
 -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은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내에서 통합운영(후생복지에 관한 자치법규가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집행)

- 마포구의 경우 본 조례가 2006. 2. 2.에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이미 소속공무원에게 “단체보험, 건강 검진 비용”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후생복지사업의 내용을 명시하여 근거를 명확히 하고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별도의 예산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개정안은 소속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행복지수를 향상시켜 활기찬 직장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사료됨

[별표 1] 관계 법령

「지방공무원법」

[시행 2022. 12. 27.] [법률 제19108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68조(사회보장)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의 복지와 이익을 적절·공정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그 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제77조(능력 증진을 위한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휴양·안전·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에 협의하여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8., 2021. 10. 8.>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의2에 따른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중증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의 제공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0., 2021. 10. 8.>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5. 5. 18., 2021. 10. 8.>

④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내용, 방법, 절차 등과 제3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5. 5. 18.>

[전문개정 2008. 12. 31.]